

동물보호법제의 이해

2018년 10월 22일(월)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서국화 변호사

동물의 권리에 대한 세계적 선언

◆ 1978년 유네스코(UNESCO) 선포

◆ 10. 15.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를 가지며(제1조)

모든 동물은 존중될 권리를 갖고(제2조)

어떠한 동물도 학대나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동물의 5대 자유

- ◆ 1979년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 - 국제동물보건기구(OIE) 지도원칙
- ◆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자유
갈증, 배고픔, 영양결핍으로부터의 자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 행동을 표현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을 자유
두려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동물 관련 법률(우리나라)

-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축산법,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물이란,

야생생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동물이란,

동물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공공정보보호법

동물보호법

1.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동물학대(제8조), 동물의 수술(제11조), 동물등록(제12조), 동물의 구조·보호(제14조)
2. 동물실험 : 동물실험의 원칙(제23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제25조 이하)
3. 동물복지축산(제29~31조)
4. 영업 : 영업의 등록/허가/승계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

- ▶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1979년 정한 '동물의 5대 자유'로 정한 내용과 동일
- ▶ 위 동물의 5대 자유는 전 세계 동물복지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통용
- ▶ 추상적, 강제력X

동물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야생생물보호법, 동물원법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자 일반법적 지위를 갖게 됨.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 례

- 악마에쿠스
- 악마비스토
- 소 아사 사건
- 제주 개트럭 사건
- 불타는 고양이
- 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끈 사건
- 동물에게 커터칼 조각을 먹이고 발톱을 뽑은 행위
- 굶긴 개에게 막걸리를 먹여 죽인 행위
: 전부 불기소(처벌 X)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일명 로트와일러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 : 재물손괴만 유죄로 인정(벌금 30만원 선고유예), 동물보호법위반은 무죄로 판단(수원지법 2014. 1. 22. 선고 2013노5055판결)

개 전기도살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7.06.23. 선고 2017고합70 판결
전기봉을 개의 입에 넣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30여 마리의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 A에 대하여 검사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로 기소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

무죄 이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 기각, 피고인의 무죄 인정([2017노2030](#))

■ 검사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개 전기도살 사건

‘잔인’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을 뜻하는데,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특정 도살방법이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수의사법 :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폭넓게 허용

- 종래 수의사법 시행령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허용 →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자들이 모두 제한 없이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 전문가 아닌 자에 의한 무분별한 진료행위가 동물학대로 이어짐
-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를 허용하던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를 「축산법」 제2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에 대해서만 자가진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2016, 2017시행)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p>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p>	<p>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p> <p>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p> <p>나.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p> <p>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p>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물 판매업자' 의 동물 등록의무를 규정할 필요성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금지행위	처벌
경범죄처벌법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는 행위	10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는 의자 위의 것에 한정)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 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를 버리거나 흘려가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환경보전법	공공수역(하천, 항만 등)에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격증 or 국가기관의 허가 요함
- 영국의 '위험한 개법(Dangerous Dogs Act 1991)' :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 4가지, 법원의 허가 필요

입법개선 방향

- 맹견을 번식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
- 맹견을 키우려는 자의 목적과 자격을 제한
- 기존의 소유자 : 특별한 관리의무 및 교육이수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향의 입법

동물의 구·조보호

- 구조·보호조치의 주체 :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 / 동물보호센터 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구호·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구조·보호조치의 대상 :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의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제외

구조·보호조치 및 소유권취득 절차

- 관할 시·군·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
-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 :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소유자를 찾을 수 있도록. 찾지 못할 경우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
-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
- 공고한 날부터 10일 경과 후 : 시·도·와 시·군·구가 소유권을 취득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최소한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취해야(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조 참조) -> 보호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공고 등을 거쳐 기증 또는 분양 가능
- 인도적 처리

- 동물실험

- 동물복지축산의 인증

야생생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I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 야생생물

- 종류 :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정함
- 포유류, 조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육상식물, 해조류, 고등균류의 각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I ~ Ⅲ급으로 분류

국제적멸종위기 야생생물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야생생물
- 우리나라는 1993. 7. CITES 협약에 가입
- 부속서 I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야생 생물 무역 금지(상업목적을 위한 국제거래를 금지, 학술연구목적으로만 거래가능(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허가증 제시 의무화))
- 부속서 II-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 야생 생물 무역 규제(상업목적의 국제거래를 할 경우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제출)
- 부속서 III -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규제하는 종(수입을 위해서는 수출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 5년마다 (환경부 고시로 제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제6조)

- 환경부장관 /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
-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제14조)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방사(放飼), 이식(移植), 가공, 유통, 보관, 수출, 수입, 반출, 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 죽이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 예외 (허가 받은 경우)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제16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 필요
-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용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 필요)
- 허가를 받아 수입, 반입된 종으로 부터 증식된 종은 수입, 반입 당시 용도와 같은 용도로 봄(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용도가 변경된 경우 증식된 종의 용도 역시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봄)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제19조)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안 됨
- 예외(허가 받은 경우)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 폭발물, 덧,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금지
-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한 경우 등 제4항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획, 채취, 고사 가능
-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제27조)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28조)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시행규칙 제34조)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2016. 6.기준 397개 구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음

로드킬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34조의6](#))
- 위 규정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 와 관련된 규정, 특별히 로드킬 당한 동물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주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음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생태통로 설치,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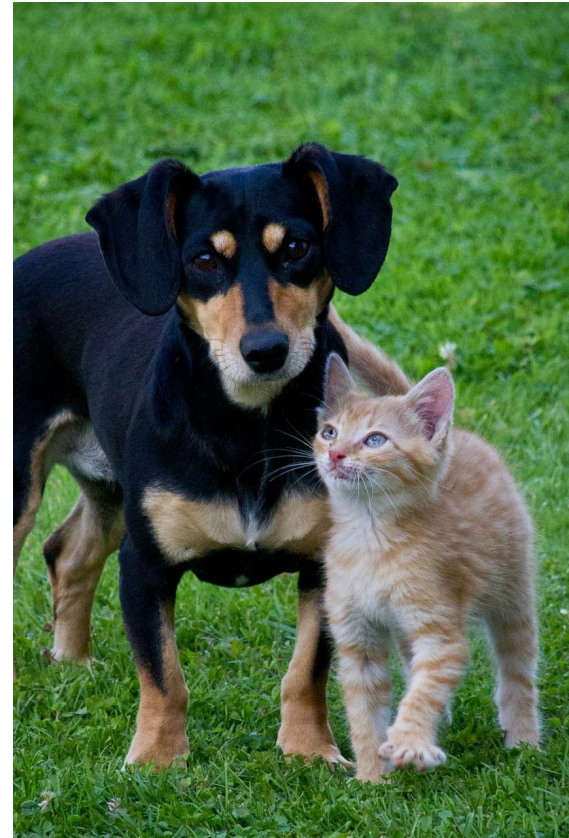
동물원 및 수족관법

- 2016. 5. 29. 제정
- 제정 전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적 법률에 분산되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운영·관리 됨
- 사육환경이나 보유 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 구현을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

주요내용

-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원,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제3조)
-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함(제6조)
-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 또는 동물원,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7조)
-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는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제9조)
-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는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매년 1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10조)
- 시·도지사는 동물원, 수족관이 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12조)

동물의 법적 지위와 동물의 권리



‘동물’의 법적 지위



국내 소송들

대한민국 헌법

동물보호법

형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① 1. 동물학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66조 재물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콰도르 헌법

(7장 71조, 72조)

‘자연’은 생명의 주기, 구조, 기능, 진화 과정의 유지와 재생성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연’은 복원될 권리가 있다.

CHAPTER SEVEN

Rights of nature

Article 71. Nature, or Pacha Mama, where life is reproduced and occurs, has the right to integral respect for its existence and for th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of its life cycles, structure, functions and evolutionary processes.

All persons, communities, peoples and nations can call upon public authorities to enforce the rights of nature. To enforce and interpret these rights,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shall be observed, as appropriate.

The State shall give incentives to natural persons and legal entities and to communities to protect nature and to promote respect for all the elements comprising an ecosystem.

Article 72. Nature has the right to be restored. This restoration shall be apart from the obligation of the State and natural persons or legal entities to compensat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at depend on affected natural systems.

In those cases of severe or permanent environmental impact, including those caused by the exploitation of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the State shall establish the most effective mechanisms to achieve the restoration and shall adopt adequate measures to eliminate or mitigate harmful environmental consequences.

각국 헌법의 동물권/동물보호

스위스

독일

인도

브라질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집트

스위스 헌법 120조 제2항

스위스 연맹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다른 유기생명체의 생식, 유전적 요소를 다루는 문제를 법으로 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과 동물, 환경의 안전 그리고 동물과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Art. 120 Non-human gene technology*

¹ Human beings and their environment shall be protected against the misuse of gene technology.

² The Confederation shall legislate on the use of reproductive and genetic material from animals, plants and other organisms. In doing so, it shall take account of the dignity of living beings as well as the safety of human being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and shall protect the genetic diversity of animal and plant species.



감사합니다.

 PEOPLE FOR
NON-HUMAN
RIGHTS